



2013년 귀속 연말정산(소득공제) 개정세법 요약

구 분	2012년	2013년
월세 소득공제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제금액 월세 지출액의 4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제금액 월세 지출액의 50%
오피스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포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<추가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(좌동)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('13.08.13. 이후 지급분)
한부모 소득공제 신설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공제금액 : 연 100만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(한부모 공제 적용)
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제대상 교육비 초·중·고등학생 급식비 초·중·방과후학교 수업료(교재구입비 제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제대상 교육비 초·중·고등학생, 어린이집, 유치원, 학원·체육시설(취학전 아동) 급식비 초·중·고등학교, 어린이집, 유치원, 학원·체육시설(취학전 아동)의 방과후 수업료·특별활동비(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학교외에서 구입한 초·중·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포함)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제율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·학원 지로영수증 : 20% 직불(체크)·선불카드 : 30% 전통시장 사용분 : 30% <추가> 공제한도 : min(300만원, 총급여액의 20%) 전통시장 사용분 : 추가 100만원 <추가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제율 신용카드 : 15%(학원 지로영수증 공제 삭제) 현금영수증·직불(체크)·선불카드 : 30% 전통시장 사용분 : 30% 대중교통 이용분 : 30% 공제한도 : min(300만원, 총급여액의 20%) 전통시장 사용분 : 추가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: 추가 100만원
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사인간 차입'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(연간 1,000분의 40)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사인간 차입'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(연간 1,000분의 34)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
월세액·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	<서식 추가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추가 월세액·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월세액·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 회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공제 명세서를 포함하여 국세청에 제출
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종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기주택저축마련저축의 납입액 40%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액 5% 소득공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득공제 적용기한(2012.12.31.) 종료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

구 분	2012년	2013년
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제한도 : 2천5백만원 - 한도포함 소득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자금, 지정기부금, 청약저축 등, 우리사주조합 출자, 투자조합출자 등, 신용카드,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- 한도제외 소득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적공제, 근로소득공제, 건강·고용보험료, 연금보험료(퇴직연금, 연금저축), 정치자금·법정·우리사주조합 기부금, 장애인 관련비용(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), 고용유지증소기업 근로자,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
출산·육아 관련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산·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육아휴직 급여·수당, 출산전후휴가 급여 - <추가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산·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동)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주수당 비과세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 ○ 비과세 금액 : 월 20만원 이내
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건설근로자 : 월300만원 - 원양·외항선원 : 월20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건설(감리업무 포함)근로자 : 월 300만원 - 원양·외항선원 : 월 300만원
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범위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월정액급여) 100만원 이하자 - (총급여액) 직전 과세기간 2,000만원 이하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월정액급여) 150만원 이하자 - (총급여액) 직전 과세기간 2,500만원 이하자
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변경 및 기한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5% 단일세율 적용 가능 ○ 적용기한 : 2012.12.31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7% 단일세율 적용 가능 ○ 적용기한 : 2014.12.31.
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및 기한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득공제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투조합,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: 투자금액 10% - 개인투자조합, 벤처기업 직접투자 : 투자금액의 20% ○ 공제한도 : 종합소득금액 40% ○ 적용기한 : 2012.12.31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득공제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동) - 개인투자조합, 벤처기업 직접투자 : 투자금액의 30% ○ 공제한도 : 종합소득금액 40% ○ 적용기한 : 2014.12.31.
고용유지 증소기업 근로자 과세특례 기한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제율 : 임금감소액의 50% ○ 공제한도 : 1,000만원 ○ 적용기한 : 2012.12.31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용기한 : 2015.12.31
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신설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목돈 안드는 전세 과세특례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임대인)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- (임차인)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- (대출한도) 3천만원(수도권 5천만원) - (대출이자) 주택 임차인이 상환 ○ 공제금액 : 임대인이 이자상환액의 40% 공제 (연 300만원 한도) '13.08.13. 이후 차입 또는 상환하는 분부터 ○ 적용기한 : 2015.12.31.
교육비 공제대상기관과 법정기부금 단체에 전공대학 추가	<추 가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포함 - 법정기부금(사립학교 등 장학금·시설비·교육비·연구비) 단체에 포함